

##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등록취소) 사전통지(청문) 공시송달 공고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취소)에 앞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사전통지(청문)하였으나, 폐문·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,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9. 3.

부산광역시장

- 공고기간: 2026. 9. 3. ~ 2026. 9. 23. (21일간)
- 공고대상: 위반업체 1개소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(등록 취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당사자           | 성명(명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성씨그린(주) (대표 노홍원)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, 216호(충무동1가)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| ○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석유판매업을 하지 않은 사항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시 적발되어 통보됨.<br>* 근 거: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 검사1팀-1532(2026. 8. 21.)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| ○ 등록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| ○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(등록의 취소 등)<br>○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1]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청문실시          |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서명 | 미래에너지산업과     | 담당자  | 최치연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(연산동) 미래에너지산업과   |     |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(051)888-4695 |
|               |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년 9월 29일 (화)<br>10시부터 11시까지(1시간) |     |              | 장소   | 시청 22층 회의실    |
|               | 주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 및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맑은물정책과 물이용팀장 |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강 재 분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
### 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\* 의견제출: 전자우편 ccy1108@korea.kr 또는 FAX 051-888-4679)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청문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의견제출인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
| 의견제출<br>내용 |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|          |
|            | 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명칭)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전화번호: ) |
|            |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기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